

수의학과 대학원 내규

- 제정 2007.5.16.
- 1차 개정 2008.04.02. (2008.04.02. 교수회의에서 제4조제3호, 제9조, 별표1을 변경하여 통과)
- 2차 개정 2009.10.28. (2009.10.28. 교수회의에서 제7조를 변경하여 통과)
- 3차 개정 2010.11.10. (2010.11.10. 교수회의에서 제11조 제2항을 변경하여 통과)
- 4차 개정 2012.05.23. (2012.05.23. 교수회의에서 제9조 제2항 제2호를 변경하여 통과)
- 5차 개정 2015.05.20. (2015.05.20. 교수회의에서 제9조 제2항 제2호를 변경하여 통과)
- 6차 개정 2015.06.03. (2015.06.03. 교수회의에서 제2조, 제4조, 제7조를 변경하고, 제9조 제3항을 추가하여 통과)
- 7차 개정 2016.06.01. (2016.06.01. 교수회의에서 제5조를 변경하여 통과)
- 8차 개정 2017.10.25. (2017.10.25. 교수회의에서 제5조 폐지하여 통과)
- 9차 개정 2022.05.11. (2022.05.11. 교수회의에서 제3조 폐지, 제1, 12, 13조를 변경하고, 제8조제1~6항을 변경 및 신설하여 통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이하 대학원)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수의과대학 대학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공) ①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하에 다음 12개의 전공분야를 둔다.(개정 2015.6.3.)

② 수의해부학 및 세포생물학전공 / 수의생리학전공 / 수의약리·독성학전공 / 수의생명과학전공 / 수의병리학전공 / 수의미생물학 및 전염병학전공 / 수의공중보건학전공 / 실험동물의학전공 / 수의내과학전공 / 수의외과학전공 / 수의산과학 및 발생공학전공 / 수의영상의학전공(개정 2015.6.3.)

제3조 (교육과정) (폐지 2022.05.11.)

제2장 입학

제4조 (지원자격) 건국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개정 2015.6.3.)

제5조 (입학정원) (폐지 2017.10.25.)

제6조 (전형방법) 매 학기별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수행되어온 입학전형 방법을 개선하며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심사는 물론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별표 1.에 제시한 기준에 의해 입학전형을 수행한다.

제3장 수료 및 종합시험

제7조 (수료학점) 건국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개정 2015.6.3.)

제8조 (종합시험) ① (시험과목) 종합시험과목은 학위과정 중 본인이 수강한 과목 중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② (출제방법)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③ (응시자격)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시험시기) 종합시험의 시행시기는 3월과 9월로 한다.

⑤ (합격인정 점수)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⑥ (시험의 면제) 대학원 학칙 제22조 5항과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제9조에 따라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장 학위논문

제9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 학위과정의 소요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대학원이 정하는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 및 학위 논문 발표를 마친 자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4.2.)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3호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개정 2008.4.2.)

1. 학위과정의 소요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대학원이 정하는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 시험)에 합격 및 학위 논문 발표를 마친 자(개정 2008.4.2.)
 2. 입학 후 주저자로서 SCI(E) 논문 1편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지 3편 이상을 게재하였거나 게재 승낙을 취득한 자. I.F. 10 미만 논문의 공동주저자는 2명까지만 인정하고, I.F. 10 이상 논문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5.23.) 공동주저자 논문은 공동주저자 수에 따라 1/N편으로 인정한다.(개정 2015.5.20.)
 3.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학위과정의 소요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7학기 이상 전일제로 등록한 자. 단, 선행 학점 취득한 자에 한하여 6학기 이상 전일제로 학업을 수행한 자(개정 2008.4.2.)
- ③ 청구논문 발표회: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갖춘 자는 매 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개최되는 수의과대학 석·박사 청구논문발표회에서 공개발표를 해야 한다.(개정 2015.6.3.)
1. 발표자의 지도교수 참석은 의무사항이며 불가피할 경우 대학원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논문심사 위원 중 1인을 선임하여 대리 참석시켜야 한다.
 2. 발표회 이외의 시간에 발표를 해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의 논문발표 일정을 정하여 전임교원 5인 이상이 참석한 발표회에서 발표해야 한다.

제10조 (심사용논문제출)

- ①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이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이 정한 청구논문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전까지는 제9조 ②항 2호와 관련된 서류를 수의학과 대학원 상설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정을 받아야만 한다. (예: 접수 마감일이 9월 17일인 경우 9월 12일까지).

제5장 학위수여

- 제11조 (학위수여)** ① 각 과정의 소요학점을 취득하고 각종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수의학 석사 또는 수의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 ②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입학 후 수료 시까지 전일제로 수학하지 않을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개정 2010.11.10.)

제6장 수의학과 대학원위원회

제12조 (대학원위원회) ① 수의학과 대학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사업무 운영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의학과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기초수의학, 예방수의학, 임상수의학 각 분야에서 선출한 2인과 대학원 주임교수 1인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대학원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대학원 주임교수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역할) 대학원위원회는 입학전형, 내규의 조정, 졸업요건의 심사 및 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내규 제9조제2항제2호는 2007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단 2006년 9월 이후에 입학한 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2편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별칙규정) 이 내규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입학한 전일제 학생이 취업 혹은 퇴학 등의 이유로 전일제 학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지도교수의 차기 신입 대학원생의 배정을 제한한다. 단,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동의를 거쳐서 취업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2008.4.2.)

이 개정 내규(제4조제3호, 제9조제1항, 제2항, 별표1)는 200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8.)

이 개정 내규(제7조)는 200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0.)

이 개정 내규(제11조제2항)는 2010년 11월 10일 현재 재학 중인 학생부터 실시하며, 대학원생의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전일제 학업여부를 매학기 개시 1개월 이내에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2.5.23.)

이 개정 내규(제9조제2항제2호)는 2012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20.)

이 개정 내규(제9조제2항제2호)는 2015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3.)

1. 이 개정 내규(제2조)는 2015년 2학기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규(제4조)는 2011년 1학기 입학생부터 소급적용한다.
3. 이 개정 내규(제7조)는 2015년 6월 3일 현재 재학 중인 학생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 내규(제9조3항)는 2015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제5조)는 2017년 1학기 신입생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5.11.)

1. 이 개정 내규(제8조)는 2022년 5월 11일 현재 재학 중인 학생부터 적용한다.